

『구미시 축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구미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의 축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축산업 및 축산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-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에 관한 사항(안 제1조, 안 제2조)
-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축산업 발전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(안 제9조, 안 제10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1)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
 - 2) 「축산법」 제2조
 - 3) 「축산물위생관리법」 제2조
 - 4)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 제2조
 - 5) 「동물보호법」 제2조
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규제개혁T/F팀, 청렴정책T/F팀과 합의

5. 검토의견

- 본 『구미시 축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』 은,
 - 「지방재정법」 개정에 따른 지속가능한 축산업 활성화를 위해 축산업 발전협의회 설치 및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시책을 수립하고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